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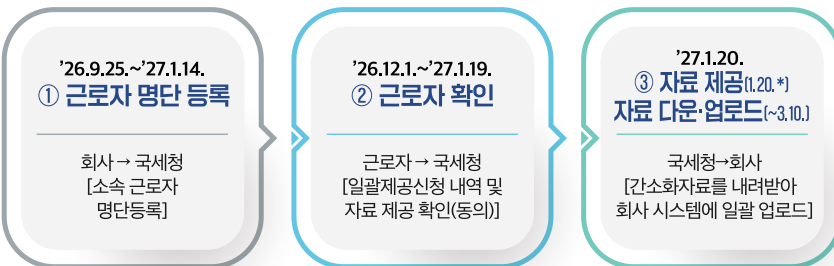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가 제공동의하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 다만, 일괄제공 신청회사가 많은 경우 1.22.까지 순차 제공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26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습니다.

- 1) 근로소득은 상반기 자료만 반영되며,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은 10월 신고분 (지급명세서 제출분)까지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 2)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7.1.14.(목)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일은 ‘27.1.20.(수)부터 입니다.
(다만, 일괄제공 신청회사가 많은 경우 ‘27.1.22.(금)까지 순차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는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일괄 제공되지 않으니 제출을 원하는 경우, 공제 증빙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다운받거나, 서비스 이용기관 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영수증을 수동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2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 연말정산

연말정산 안내홈페이지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전화상담 문의
☎ (국번 없이) 126->1->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회사 |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유의사항



근로자 명단 등록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서 '26.9.25.부터 '27.1.14.까지 등록 및 추가·제외 가능
- ①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 이용 ② 직접 입력
- ③ 전년도에 등록한 명단을 불러오는 방식 중 선택하여 근로자 명단 등록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화면에서 일괄제공 PDF 파일 압축해제용 비밀번호(숫자 4자리) 설정



PDF파일 내려받기

- '27.1.20.(수)*부터 '27.3.10.(수)까지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가능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가 많으면, 파일 생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1~2일 뒤부터 다운로드 가능
- 일괄제공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26.12.1.(화)부터 '27.1.19.(화)까지 근로자 확인(동의)을 완료하도록 안내



세무대리인 이용방법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
- 다만,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명단 등록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만 가능

근로자 | 자료제공 확인 및 유의사항



근로자 확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 완료하면 일괄제공 가능
*공동·금융·간편인증·생체인증 또는 아이디 로그인 + 휴대폰 문자 인증으로 접속
- 전년도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이행한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올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부양가족이 '27.1.19.(화)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주의 '26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하고 일괄제공
▶ 근로소득은 상반기 자료만 반영되며,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은 10월 신고분 (지급명세서 제출분)까지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사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나요?

- 회사는 일괄제공 받는 날짜를 선택할 수 없으며, 신청회사 수에 따라 1.20.(수)*부터 1.22.(금)까지 순차 제공됩니다. ('26년 귀속부터 일괄제공 받는 날짜 선택 기능 삭제)
* 1.18.까지 의료비 등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에 따른 최종 자료 제공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모두 명단 등록해야 하나요?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되며, 등록 이후 '27.1.14.(목)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가 가능합니다.
- 또한, 직원의 입·퇴사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은 **매년 1회 반드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 등록 필요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수임 납세자 관리 ▶ 기장대리 수임납세자 등록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화면에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선택



근로자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또 한 번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해야하는 이유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에 대해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는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27.1.19.(화) 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근로자의 자료와 함께 제공되므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26년에 발생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외하고 일괄제공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은 상반기 자료만 반영되며,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은 10월 신고분(제출분)까지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 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동의)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

-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다만, 이직하여 새로 취직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명단등록을 하고 근로자는 다시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 전자적 방법 외에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방법이 있나요?

- 지금까지는 일괄제공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서면으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 또는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휴대폰 문자인증

:: 서면으로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에서 근로자명단을 등록 한 후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신분증 지참),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일괄제공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27.1.19.(화)까지 세무서에서 동의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만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